

의안번호	2206038
의 퇴 인	김민전 의원
회 답 일	2024.12.13.
추계번호	24C5492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 (산학연협력계약)	(제1항)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<u>대학병원의 장</u> 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(이하 “산학연협력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 제17조,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 제15조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 제12조 및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 제13조에 따라 결직을 하고 있는 산업교원을 연구책임자로 두는 경우의 산학연협력계약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체결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장이 체결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<u>대학병원의 장</u> 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.	의무규정
		(제5항)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, 대학의 설립·경영자 또는 <u>대학병원의 장</u> 이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.	
2	안 제39조 (산학연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등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·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 또는 <u>대학병원</u> 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(산학협력계약) 안 제39조(산학협력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산학협력단,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산학협력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
 - 현행법은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대학병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나, 개정안은 이를 추가하여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 등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함¹⁾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립대학병원 등이 설립한 산학협력단 등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이 실시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규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2024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제5조 등에 따라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
 - － '24.1.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'24.7.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력 시행계획을 발표함

1) 안 제2조(정의), 안 제24조(산학협력계약), 안 제24조의2(산업교육기관과 대학병원의 상호 협약), 안 제25조(산학협력단의 설립·운영), 안 제26조(정관), 안 제27조(산학협력단의 업무), 안 제28조(산학협력단의 단장), 안 제30조(사업연도), 안 제31조(수입), 안 제32조(지출), 안 제34조(연구원 등의 채용 등), 안 제36조의2(기술지주회사의 설립·운영), 안 제36조의5(기술지주회사의 명칭), 안 제36조의6(이익배당의 사용제한), 안 제36조의7(교직원,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), 안 제37조(협력연구소), 안 제37조의2(인력의 공동활용), 안 제37조의4(연구시설·장비의 공동 활용 등)

- 해당 시행계획은 ‘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산학협력 추진’을 비전으로 삼고, ‘산학협력 활성화로 지역인재 양성-취창업-정주 선순환체계 구축’을 목표로하며 미래/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4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, '24년 계획된 투자로 총 4조 7,010억원을 제시함

[표2] 2024년 예산현황(총괄)

(단위 : 개, 억 원, %)

구분		중앙부처							시·도	총계
		기재부	교육부	과기정통부	산업부	고용부	중기부	합계		
과 제 수	사업수	-	28	18	5	4	6	61	402	463
	정책수	1	8	2	-	-	-	11	11	22
	합계	1	36	20	5	4	6	72	413	485
예산		비예산	17,389 (37.0)	2,590 (5.5)	1,727 (3.7)	9,871 (21.0)	700 (1.5)	32,277 (68.7)	14,733 (31.3)	47,010 (100.0)

자료: 교육부 보도자료(2024.07.15.)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산학협력 사업이 확대되거나 관련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에서 대학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내용 및 그 규모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정부는 '23년 10월 ‘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’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‘필수의료 혁신전략’을 발표하면서 필수의료 연구 참여 활성화 및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진료-연구 병행지원체계 강화 및 ‘산학협력단 설치’ 추진을 발표한 바 있음²⁾
- 이에 개정안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2) 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」 (2023.10. 보건복지부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